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중 소 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을 기존의 ‘출연’에서 ‘보조’, ‘융자’, ‘보증’ 방식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25. 12. 30일 통과(’26. 7. 1일 시행)됨에 따라, 융자·보증 방식 R&D 지원 기관, 대상·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가. R&D 지원 방식이 기존의 ‘출연’에서 ‘보조’, ‘융자’, ‘보증’을 포함하는 ‘지원’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안 제7조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융자·보증 지원 기관을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다. 보조, 융자, 보증 방식으로 R&D 지원 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조 방식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8조 개정)

라. 융자·보증 방식 R&D 지원의 대상, 조건, 절차 등 사항은 각 지원에 관한 타 기존 법령을 따르되, 기술개발계획서 등 R&D에 맞추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조의2 신설)

마. 라. 항목을 반영한 가지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하고, 기타 어문규범에 맞지 않게 표현된 문장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소기업기

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연구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하려는 때에도 같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지원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용자 및 보증의 대상·조건·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

른 용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기술개발계획서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자 및 보증의 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바에 따른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
2.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자·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연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8.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
--	---	--	--	---

<u>인정하는 사항</u>	<u>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계획</u>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 설></u>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③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하려는 때에도 같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지원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	--

<u>인정하는 사항</u>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기준 및 범위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관리계획</u>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출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제8조의2 (생략) <신설>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기준 및 범위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조건·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기술개발계획서 및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자 및 보증의 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 에 따른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 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6조에 따른 기금운 용요강 2.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 금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 법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용자·보증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 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 정) ----- ----- ----- 각 호 ----- ----- -----.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 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 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 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술 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 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 보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 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 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 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 수 등에 관한 사항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 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 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술 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 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 보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 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 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 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 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⑧ 삭제

⑨ (생략)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

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생략)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

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

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	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 마. (생략) 3. (생략) ③ (생략)	----- ----- ----- ----- -----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연 락 처	(044) 204 - 7764